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3
----------	-----

제출년월일 : 2004. . .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이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연가 일수 축소 조정 및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강화 신설(안 제5조의2)
- 나.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근무시간의 조정(안 제12조)
- 다.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전일 근무제 폐지(안 제15조의2)
- 라.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조정(안 제17조)
- 마. 배우자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일수 확대 조정(별표 2)

□ 개정조례안 : 불입

□ 참고사항

- 신·구문 대비표 : 불입
- 관계법령 발췌서 : 불입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5조의2 제목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육감은 토요일에 공무원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중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한다.

제17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6월이상	1년미만	6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6년이상		21일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중 “출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대 상	일 수
출 산	배우자	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u><신설></u></p>	<p>제5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p>제12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5조의2 규정에 의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p>	<p>제12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15조의2 규정에 의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p>	<p>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p>																																				
<p>제15조의2(토요일휴무제및전일근무제) ①교육감은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위원회및교육감 소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요일에 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제15조의2(토요일휴무제) ①교육감은 토요일에 공무원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p>																																				
<p>②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p>	<p>② 토요일휴무제----- ----- -----.</p>																																				
<p>제17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 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p>	<p>제17조(연가일수)①----- -----.</p>																																				
<table border="1"> <thead> <tr> <th>재직기간</th> <th>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 <td>3월이상 6월미만</td> <td>4</td> </tr> <tr> <td>6월이상 1년미만</td> <td>7</td> </tr> <tr> <td>1년이상 2년미만</td> <td>10</td> </tr> <tr> <td>2년이상 3년미만</td> <td>13</td> </tr> <tr> <td>3년이상 4년미만</td> <td>16</td> </tr> <tr> <td>4년이상 5년미만</td> <td>19</td> </tr> <tr> <td>5년이상 6년미만</td> <td>22</td> </tr> <tr> <td>6년이상</td> <td>23</td> </tr> </tbody> </table>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	6월이상 1년미만	7	1년이상 2년미만	10	2년이상 3년미만	13	3년이상 4년미만	16	4년이상 5년미만	19	5년이상 6년미만	22	6년이상	23	<table border="1"> <thead> <tr> <th>재직기간</th> <th>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 <td>-----</td> <td>3</td> </tr> <tr> <td>-----</td> <td>6</td> </tr> <tr> <td>-----</td> <td>9</td> </tr> <tr> <td>-----</td> <td>12</td> </tr> <tr> <td>-----</td> <td>14</td> </tr> <tr> <td>-----</td> <td>17</td> </tr> <tr> <td>-----</td> <td>20</td> </tr> <tr> <td>-----</td> <td>21</td> </tr> </tbody> </table>	재직기간	연가일수	-----	3	-----	6	-----	9	-----	12	-----	14	-----	17	-----	20	-----	21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																																				
6월이상 1년미만	7																																				
1년이상 2년미만	10																																				
2년이상 3년미만	13																																				
3년이상 4년미만	16																																				
4년이상 5년미만	19																																				
5년이상 6년미만	22																																				
6년이상	23																																				
재직기간	연가일수																																				
-----	3																																				
-----	6																																				
-----	9																																				
-----	12																																				
-----	14																																				
-----	17																																				
-----	20																																				
-----	21																																				
<p>② ~ ③ (생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별표2】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별표2】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출산	배우자	1	출산	-----	3

관계법령발췌서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